

1. 제정이유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붙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안내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5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6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7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8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장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10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	---

제11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사업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2조(「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의 개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13조(「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4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호구역”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이전하여야”를 “이전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15조(「예비군법 시행규칙」의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예비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제1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

제17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및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8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합니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9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20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고시 등이 있는 날”을 “고시 등이 있는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이전에 공람·공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공람 또는 공

고가 있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u>인감증명서</u> 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u>인감증명서</u>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보호구역</u> 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u>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u>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u>이전하여야</u> 한다. <u><신 설></u>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u> ----- ----- ----- <u>노인 또는 장애인</u> ----- ----- ----- <u>이전해야</u> -----.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u>

신·구조문대비표

– 13 –

지증서 및 권리자의 <u>인감증명서</u> <u>서</u>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 다) ② (생 략)	----- <u>인감증명</u> <u>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 -- ② (현행과 같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u>고시 등이 있는 날</u>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 ---- <u>고시 등이 있는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이전에 공람·공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공람 또는 공고가 있는 날을 말한다)</u>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